

---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 제27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

2017. 2. 28(화) 07:30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 제27회 임시 이사회

- 일 시 : 2017년 2월 28일(화) 07:30
- 장 소 : 달개비 (중구 정동)
- 재적이사 : 11명
- 출석이사 : 9명
- 출석감사 : 2명

○○○ 사무국장이 제27회 임시이사회 의 성원을 보고하다.

○○○ 이사장이 인사말에 이어 안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 사무국장이 미리 배포된 회의자료를 통하여 주요보고안건에 관하여 설명하다.

- 보고안건**
1. 전차 이사회 회의보고
  2. 임원변경 보고
  3. 2017년 연간 이사회 운영 계획
  4. 장학생 선정위원회 위원 변경 보고
  5. 제1회 인사위원회 결과 보고

보고사항이 완료되어 이사장이 다음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구하다.

### 제144호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의 건

이사장은 제144호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의 건을 상정하다. ○○○ 사무국장이 제144호 안건과 관련하여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설명하고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이번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였다고 설명하다.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상세내역은 2016년 12월에 ○○○에서 기탁한 97,147,628원은 결손가정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청춘 Start 장학금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외에 2016년도에 기부된 ○○○, ○○○, ○○○ 기부금 630,000원을 목적사업비에 사용하고자 한다고 말하다. 2017년에는 서울시에서 출연 기탁금 9,757,945천원을 기부할 예정이며 이 기탁금은 서울장학재단 운영비 및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며 서울시 교육정책담당관과 협의를 통해 2개월에 한 번씩 서울장학재단으로 입금하기로 되어있음을 설명하다. 매월 입금 될 예정금액은 1~2월 목적사업비 276,978천원, 3~4월 목적사업비 1,976,978천원, 5~6월 목적사업비 2,575,478천원, 7~8월 목적사업비 309,446천원, 9~10월 목적사업비 3,228,226천원, 11~12월 목적사업비 1,357,006천원임을 설명하고, 경영평가관련 예비비 33,833천원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출연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하다. ○○○에서 기탁한 55,000천원은 저소득가정의 고등학생을 위한 청계천꿈디딤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에서 저소득고등학생지원을 위한 오토꿈이름서울 장학금으로 30,000천원이 기부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그룹인 ○○○와, ○○○에서는 교육봉사를 실천하는 우수한 대학생지원을 위한 H-점프스쿨 장학금으로 125,000천원의 장학금을 기탁할 예정이며, ○○○에서 저소득대학생지원을 위한 유명아학업장학금으로 48,000천원을 기탁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 및 임직원들이 결혼가정 자녀지원을 위한 청춘start장학금으로 103,000천원을 기탁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이외에 ○○○ 및 ○○○학생이 2,120천원 기탁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기탁금들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하다. 2017년 상반기에는 ○○○에서 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이사가 지정기탁금 및 서울시 출연금을 심의자료의 사업계획대로 집행 할 것을 요청하다.

이사장이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의 건에 대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4호 안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145호 2016년 결산(안) 심의의 건

이사장은 제145호 2016년 결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다. 이사장이 안건 145호 2016년 결산(안) 심의의 건과 관련하여 ○○○ 감사에게 의견을 구하다. ○○○ 감사가 2016년 결산(안)에 대해 걱정하다고 판단되며,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회계감사를 진행 했으며,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재무제표(감사 보고서)도 걱정하게 작성을 했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별지인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의 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를 설명하며, 서울시의 추천 회계법인 중 다산회계법인을 통해 외부재무회계감사를 받았다고 설명하다. ○○○ 이사가 외부회계감사 과정에서 특별히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지 묻다. ○○○ 사무국장이 외부회계감사 중 지적받은 사항은 없다고 말하다. ○○○ 감사가 외부회계감사 시 외부회계법인인 매년 바뀌는지에 대하여 묻다. 이사장이 매년 변경 된다고 말하다. ○○○ 감사가 외부회계 감사인이 매년 변경되면 재단의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매년 변경되는 것보다 일정한 기간(3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외부회계감사와 기관과(내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다. 이에 ○○○ 이사가 서울시 기획조정실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하다. ○○○ 사원이 이사회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서, 통장보유현황 등을 설명하다.

이사장이 서울시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출연금을 주고, 목적사업비로 장학사업을 매달 집행하기 때문에 단기성 정기예금으로 기본재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감사가 정기예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묻다. ○○○ 사무국장이 1.5%에서 1.6% 수준이라고 말하다 ○○○ 감사가 정기예금 수익률이 너무 낮으므로 운용수익을 높이기 위해 다른 자산 운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이사장이 기금운용위원회 등을 통해 재단의 기본재산 운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다.

이사장이 2016년 결산(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5호 2016년 결산(안) 심의의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146호 2016년 세입·세출 결산(안)심의의 건

이사장은 제146호 2016년 세입·세출 결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하다. ○○○ 사원이 2016년 예산안 대비 세입·세출대조표에 대한 보고를 하다. 세입 총계는 12,862,261,483원이며, 세출 총계도 12,862,261,483원으로 차기이월금인 세계잉여금 1,434,363,146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서울희망장학금 하나고등학교분야 장학금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서울시하나고등학교 화해 권고 판결이 나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나고등학교 장학금집행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연초 예산대로 세입으로 들어와서 집행율이 75%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의 예산을 책정하여 추후 예산을 조정하여 장학사업 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서울희망장학금 대학분야가 전국단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신청 시기가 늦어져 장학사업비 집행율이 저조하였다고 말하며, 2016년 예산 잔액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대부분 집행 하려고 한다고 말하다. ○○○ 감사가 장학금 사업의 기준에 대하여 묻다. 이사장이 장학사업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구체적인 선발 기준 등은 서울시와의 협의, 민간기탁자와의 협의, 장학생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2016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6호 2016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147호 2016년 세계잉여금 처분의 건

이사장은 제147호 2016년 세계잉여금 처분의 건을 상정하다. ○○○ 사원이 세입·세출 결산 결과 1,434,363,146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전액 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말하다. 목적사업비중 시출연금 잔액과 지정기탁사업비에 1,077,725,598원을 배정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분야 등 7개 분야에 사용하고 전기운용소득 및 전전기운용소득 집행 잔액 356,637,548원은 서울희망SOS 장학금, H-점프스쿨, 장학사업 개선 연구사업 등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말하다.

이사장이 서울희망SOS장학금은 예전 우리아이희망장학금 장학사업 이며, 갑자기 어려워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장학사업 명칭변경에 관하여 설명하다.

이사장이 2016년 세계잉여금 처분의 건에 관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7호 세계잉여금 처분의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148호 2017년 실행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의 건

이사장은 제148호 2017년 실행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하다. ○○○ 부장이 회의자료를 통해 2016년 실행예산 대비 2017년 실행예산을 설명하며 서울시 출연금 및 기부금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다. 2017년 세입 실행예산 총액은 11,821,036천원이며, 서울시 출연금 9,757,945천원, 기

부금 수입 363,120천원, 전기이월금 1,434,363천원, 전기 선급법인세 환급 및 이자 수익 등 265,608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세출 실행예산은 총 11,821,036천원 이며, 경상운영비 652,839천원, 사업비 10,642,545천원, 차기이월금 525,65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설명하다.

재단의 전략방향 및 2016년 주요 성과, 2017년 주요경영방향 및 성과약속 등 2017년 사업운영계획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다. 이사장이 지속가능한 혁신적 장학사업 연구에 관해 장학사업자문위원회 및 연구에 대해 재단 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다. ○○○ 부장이 장학사업 개선을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실무자 소위원회운영, 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성과관리 부분은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다.

○○○ 이사가 차기이월금 중 기부금과 관련하여 2017년에 기부를 받아서 그해에 바로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해로 이월해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를 묻다. ○○○ 부장이 H-점프스쿨 장학사업은 2017년도에 기부 받은 금액 중 일부는 2018년도 장학사업의 집행하는 예산으로 반영을 하였고, 청춘 Start장학금, 유영아학업장학금 및 청계천꿈디딤장학금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에 기부되는 금액을 예상하여 내년도 사업을 반영하여 차기 이월금으로 반영 했다고 설명하다. 또한 차기이월금 중 2016년 기본재산 운용소득으로 발생한 265,608천원은 올해 장학사업으로 집행 한다고 설명하다.

○○○ 감사가 2017년 사업 운영계획 정책관리 중 재단 투명경영을 위한 정책 수행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다. 재단은 업무 계획 및 청렴하게 하려는 노력이 좋으며, 부패방지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감사위원회로 즉시 보고 하고, 사전예방 체계 수립 및 청렴자율준수제를 실시하여 재단의 청렴성을 홍보하는 정책 수행을 하도록 요청하다.

○○○ 이사가 서울희망장학금 하나고등학교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하다. 법원 권고 화해결정으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50%씩 예산을 조정하였으므로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일부 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잔여예산 발생 시 고교분야 장학금으로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이사장이 2017년 실행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의 건에 관한 의견을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8호 2017년 실행예산 및 사업계획 심의의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149호 이사 선임에 관한 건(연임)**

이사장은 제149호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제149호 안건과 관련하여 이사장이 재단 임원 중 ○○○, ○○○ 이사가 2017년 3월 10일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이사장이 임기가 만료 예정인 임원에게 연임의사를 사전에 확인해 본바 ○○○ 이사와 ○○○ 이사가 연임의사를 밝혀 연임에 동의해주신 이사들의 연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하다.

○○○ 이사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채우고 다시 연임을 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 이사와, ○○○이사의 연임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 바,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연임에 동의하다.

이사장은 제149호 이사 선임에 관한 건(연임)과 관련하여 연임에 동의한 ○○○ 이사, ○○○ 이사를 선임(연임)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하다.

#### **제150호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이 제150호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이사장이 제150호 안건과 관련하여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재단 이사회운영규정에 제17조(의결 정족수 등) 3항에 대하여 삭제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50호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151호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이 제151호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이사장이 제151호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시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주요 개정사항 요청에 의거하여 제보자(신고자)보호방침 등 신고자 불이익 조치 위반자에 대한 징계 규정(해임 이상) 마련과 채용관련 비위행위 징계 신설(정직 이상) 및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등에 대한 징계수위 규정을 감봉이상에서 정직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다.

○○○ 감사가 제보자(신고자) 보호방침 규정과 관련하여 신고자 불이익 조치 위반자의 징계 사유 문구를 보복 위반행위가 아닌 보복 금지의무 위반행위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다. 재단 이사회운영규정에 제17조(의결 정족수 등) 3항에 대하여 삭제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 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복 금지의무 위반행위로 징계사유 문구를 수정하기로 하다.

이사장이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51호 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비위행위는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제보자(신고자) 보호방침 규정 관련 신고자 불이익 조치 위반자 징계 규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152호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이 제152호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이사장이 제152호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규정을 준용하여 서울장학재단의 복무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재단 복무규정 제27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1항을 지방

공무원법 제7조의4에 의거하여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로 개정 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52호 복무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153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장이 제153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이사장이 제153호 안건과 관련하여 기관 경영평가 및 직원에 대한 개별 성과평가 결과에 의한 기관 성과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보수규정 17조의1(성과급)』

①항「기관 경영평가 및 직원에 대한 개별 성과평가 결과에 의한 기관 성과급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항「기관 성과급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로 개정 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 이사가 성과급 예산은 반영이 되었는지 묻다. ○○○ 부장이 성과급 예산은 반영이 되었다고 설명하다.

이사장이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53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2017년 2월 28일